

##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와 시사점

- (연기금의 주식투자 현황) 총 75개의 연기금중 주식투자를 하는 기금은 기존에 4개이며, 총 150조원의 자산중 4%(8월 현재)가 주식에 투자되어 있음
  - 연기금의 여유 자금은 대부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(2000년 10조원)되고, 안전성을 중시하여 채권매입, 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운용
  - 외국의 연기금 주식투자 비율: 미국 53%, 일본 17%, 영국 66%, 캐나다 29%
- (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) 증시 부양을 위해 현재 엄격히 투자 제한되어 있는 연기금 관련제도를 개정하고, 주식투자 전용펀드 설정, 주식투자의 사후책임 면제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함
  - (주식투자 제한 제도의 정비) 기금관리기본법을 주식투자의 원칙적 허용으로 개정, 개별 연기금의 상황에 따른 주식 투자 제한을 최대한 완화, 자산운용에 관한 세부 항목의 통합으로 탄력적인 자산운용방법의 선택 등을 피함
  - (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제도화)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용펀드 설정, 장기적으로는 기금들의 여유자금을 모은 Investment pool에 의한 운용 위탁 방안 검토
  - (주식투자에 대한 책임 면제를 제도화) 연기금의 운용담당자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주식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내부운용지침에 명시
- (평가) 1.5조원 규모의 연기금 주식투자 투입으로 주가 부양과 저점 매수를 통한 수익성 확보가 기대될 수 있으나, 향후 안정적 투자 운용을 위해 연기금의 투자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고, 자산운용전문가의 투입이 이루어져야 함
  - 재경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서 1) 연기금이 투신사의 주식 매수세 역할을 대체, 2) 장기투자 성향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안정화 도모, 3) 전문성 있는 투신사를 통한 안정적 주식투자 운용 등을 내세움
  - 장기적으로 자산운용 전문가의 채용과 주식투자 운용의 선진화가 절실함

(임진국 연구위원 [jldim@hri.co.kr](mailto:jldim@hri.co.kr) ☎ 3669-4026)

## 최근 주요 정책(2000. 10. 9 ~ 10. 17)

<p>「남북경협 추진 기본 방향」</p>	<p>재정경제부 (10.10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의 수용 여건과 국내 경제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·점진적으로 추진</li> <li>- 국민 부담 최소화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수익성 있는 사업은 민간 주도하에 국내외 자분을 적극 활용</li> <li>· SOC 확충 사업은 민자 및 외자를 최대한 활용하되 선택적으로 정부가 지원</li> <li>· 중소기업과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경제단체 등을 통해 과잉 중복 투자 방지 유도</li> </ul> </li> <li>- 투명성과 공개성 확립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여론 수렴을 위해 「남북경협추진회의」와 「남북경협민간자문회의」 설치</li> </ul> </li> </ul>
<p>「연기금 주식투자 제약 요인 해소 방안」</p>	<p>재정경제부 (10.14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용 펀드 설정: 전문 투자 기관에 주식투자를 위탁. 초기에 1조 5,000억 원 정도를 조성한 뒤 점차 확대</li> <li>· 장기적으로 투자 풀(investment pool)을 제도화</li> </ul> </li> <li>- 관련 제도 정비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금관리기본법 및 개별 기금설치법을 개정하고 주식투자 관련 내부지침을 최대한 완화</li> <li>· 연기금 운용 담당자에게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 면제</li> </ul> </li> </ul>
<p>「외국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지침」</p>	<p>공정거래위원회 (10.14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외에서 외국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단속하고 주요 선진국의 자국법 역외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지침 제정</li> <li>- 국내에 영업 거점이 있는 있는 외국 사업자의 경우, 국내 영업 거점 뿐 아니라 외국 사업자(본사)를 피조사인으로 할 수 있음</li> <li>- 국내에 영업 거점이 없는 외국 사업자의 경우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조사 및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음</li> </ul>
<p>「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」</p>	<p>재정경제부 (10.16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 개정 내용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소득 공제 대상 기부금 범위 확대</li> <li>· 주택청약부금을 소득공제에서 제외하되, 전용면적 25.7평 이하 주택의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 지급액에 대해 소득 공제</li> <li>·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의 양도·평가차손익을 과세 대상에 포함</li> </ul> </li> <li>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세법상 과세특례를 인정해줄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 협약과 기업분할 요건 지정</li> <li>· 생계형 저축 및 투신사의 신탁저축에 대해 이자·배당소득세 면제(각 1인당 저축 2,000만 원 이하)</li> </ul> </li> </ul>